

결 정

2018 - 2010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2. 東亞日報 발행인 임 채 청
3.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주 문

朝鮮日報 2017년 12월 1일자 A31면 「국내최초! 스페로이드 파장 활용 전신 ‘회오리순환펌프기」 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2월 13일자 A23면 「국내최초! 스페로이드 파장 활용 전신 ‘회오리순환펌프기」 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2월 18일자 29면 「국내최초! 스페로이드 파장 활용 전신 ‘회오리순환펌프기」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朝鮮日報, 東亞日報, 중앙일보의 위 적시 광고들은 『가만히 앉거나 서 있기만 해도 전신순환운동이 가능하다』 는 ‘회오리순환펌프기’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공산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2~4건의 체험기를 실고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이 제품 사용으로 『냉수보다 차가웠던 손발이 따뜻해졌고』 『발이나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자다 깨는 일이 많아 졌는데 이제 꿀잠 자니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수십 번씩 다리, 손끝에 저림 현상이 나타나서 불편했는데 운동을 통해 정말 좋아진 것 같다』 고 선전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 독자들은 이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기기법」 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광고는 광고의 책임 소재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밝히지 않고 제품의 체험 문의 전화번호만 적어놓았다. ‘통신판매 광고는 정확한 판매 주체, 광고주인 법인 또는 상호의 명칭, 주소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2),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월 10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용 담	김용담
위 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이동현
	장 인 철	장인철
	강 희	강희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현갑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2)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